



싱가포르 선사간협정 독금법포괄적용 제외 허용

경쟁법위원회, 주관부처인 통상산업성에 권고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싱가포르 경쟁법(Competition Act)에서 해운동맹과 항로안정화 협정 등이 포괄적용 제외대상으로 존속하게 되었다.

동국의 경쟁법위원회(CCS : Competition Commission Singapore)는 지난 12월6일 외항 정기선사간 협정에 대한 독금법 적용 제외제도의 도입을 주관부처인 통상산업성에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포괄적용제외제도의 세칙은 2006년 7월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동제도의 채택을 주장했던 일본선주협회는 이를 환영했고, 태국 등 독금법의 정비를 검토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선사간 협정에 관한 독금법 적용제외에는 협조 배선의 컨소시엄도 협정에 포함된다. 독금법 적용 제외제도의 도입은 담당부처인 통상산업성 장관의 승인을 얻은 다음 정식 결정된다.

동 제도의 내용은 싱가포르가 국제물류의 핵심(Hub) 지역임을 근거로 작성되었고, 컨설팅회사가 이를 검토한다.

싱가포르에서는 작년 10월, '2004년 경쟁법'이 국회에서 통과, 2006년 1월부터 대부분의 규정이 시행되게 되었다. CCS는 동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지금까지 동법에 관한 가이드라인 책정작업을 진행해 왔다.

발표에 의하면, 컨소시엄은 10년을 기한으로서 포괄적용제외를 허용하고, 동맹, 항로안정화협정

은 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채 당분간 포괄적용 제외를 인정, 향후의 국제 정세를 판별하면서 재검토될 전망이다. 세칙은 2006년 7월에 확정되고,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금년 5월, 일본선주협회와 홍콩선주협회는 연합하여 싱가포르 경쟁법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선사간 협정에 대한 경쟁법 적용 제외 조치를 요구해왔다.

발틱, 지수산정 아시아 비중 확대

아시아항로 비중 증대로 수정 불가피

발틱해운거래소는 향후 벌크선 지수 산정에 있어 아시아항로의 비중을 더욱 확대할 발침이다.

발틱해운거래소의 제레미 펜(Jeremy Penn) 이사는 현재 정보가 유럽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수정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시아에 주재하고 있는 해운 브로커들이 이미 유조선시장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고 말하고, 현재 호주 케미컬항로를 시험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중국간 VLCC 항로는 몇달 전에 테스트를 마친 바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발틱 건화물선 해운지수 가운데 23개 건화물선 정기용선과 항해용선의 60%가 아시아항로이며, 주요 선형별로 구분할 경우 아시아 항로의 비중은 케이프사이즈 지수가 65%, 파나막스 지수가 70%, 핸디사이즈 지수가 75%에 달하고 있다.